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12. 1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9. 12. 1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9. 12. 21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사유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임용자격중 미비사항 보완(안 제4조) : 비서관 또는 비서의 자격
- 전보가능 직위제한(안 제7조) : 단위기관 내 동질업무 직위로 한정
- 근무상한 연령 단서조항 신설(안 제8조)
 - 비서관 또는 비서에 대한 상한연령 적용 제외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경상남도표준안(총무 12100-737. '99.11.20.)지침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같이하는 비서직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배제하고, 단위기관 내 동질적 업무범위 내에서만 전보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 일반 별정직공무원과의 현행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선거에 의하여 공무원과 같이 하는 별정직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은
- 답 : 법에 의하여 채용기준이 되어 있으며, 향후 전문성이 있는 자를 별정직으로 채용할 계획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9. 12.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